

<p>환매조건부 매수 삭제</p> <p>환매조건부 매수 추가</p>	<p>4. ~ 5. (생략)</p> <p>6. 환매조건부 매도 또는 매수</p> <p>7. ~ 9. 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증서(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. 이하 “어음”이라 한다)</p> <p>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환매조건부 매도</p> <p>7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환매조건부 매수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용어 정비</p> <p>호번 정정</p>	<p>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양도성 예금증서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</p> <p>4. ~ 5. (생략)</p> <p>7. (생략)</p> <p>8. (생략)</p> <p>9. (생략)</p>	<p>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</p> <p>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
<p>기재 정정</p>	<p>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
	<p>1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. 다만,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.</p> <p>가.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</p> <p>나. (생략)</p> <p>2. ~ 9. (생략)</p>	<p>1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. 다만,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.</p> <p>가.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~ 9. (현행과 같음)</p>
<p>오탈자 정정</p>	<p>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4호 내지 제8호, 제17조 제2호 내지 제8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4호 내지 제8호, 제17조 제2호 내지 제8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의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환매일정 변경</p>	<p>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 <p>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2영업일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3영업일)에 공고되는</p>	<p>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 <p>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3영업일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4영업일)에 공고되는</p>

	<p>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4영업일</u>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4영업일)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3영업일</u>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4영업일)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기재 정정	<p>제26조(환매연기)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전전영업일</u>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6조(환매연기)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전영업일</u>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	<신설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